

박형준 / 3월 / 기초GS Plus / 7회

| 수강번호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항 총점 | 석차 | 상위%    | 가득성 평점 | 응시인원 |
|--------|------|------|------|------|-------|----|--------|--------|------|
| 556214 | 19   | 12.5 | 0    | 0    | 31.5  | 1  | 0.50%  | 4      | 202  |
| 556312 | 18   | 12.5 | 0    | 0    | 30.5  | 2  | 0.99%  | 5      |      |
| 556213 | 17   | 12   | 0    | 0    | 29    | 3  | 1.49%  | 4      |      |
| 557746 | 18   | 11   | 0    | 0    | 29    | 3  | 1.49%  | 4      |      |
| 551074 | 16.5 | 12   | 0    | 0    | 28.5  | 5  | 2.48%  | 5      |      |
| 556703 | 17.5 | 11   | 0    | 0    | 28.5  | 5  | 2.48%  | 4      |      |
| 556961 | 16.5 | 12   | 0    | 0    | 28.5  | 5  | 2.48%  | 4      |      |
| 556383 | 17   | 11   | 0    | 0    | 28    | 8  | 3.96%  | 4      |      |
| 557114 | 17   | 11   | 0    | 0    | 28    | 8  | 3.96%  | 5      |      |
| 556511 | 17.5 | 10   | 0    | 0    | 27.5  | 10 | 4.95%  | 4      |      |
| 556043 | 15.5 | 11.5 | 0    | 0    | 27    | 11 | 5.45%  | 4      |      |
| 556205 | 15.5 | 11.5 | 0    | 0    | 27    | 11 | 5.45%  | 3      |      |
| 556728 | 16.5 | 10.5 | 0    | 0    | 27    | 11 | 5.45%  | 4      |      |
| 556958 | 15.5 | 11.5 | 0    | 0    | 27    | 11 | 5.45%  | 4      |      |
| 556321 | 15.5 | 11   | 0    | 0    | 26.5  | 15 | 7.43%  | 4      |      |
| 556358 | 16.5 | 10   | 0    | 0    | 26.5  | 15 | 7.43%  | 4      |      |
| 556416 | 16.5 | 10   | 0    | 0    | 26.5  | 15 | 7.43%  | 5      |      |
| 556448 | 16.5 | 10   | 0    | 0    | 26.5  | 15 | 7.43%  | 4      |      |
| 556609 | 16   | 10.5 | 0    | 0    | 26.5  | 15 | 7.43%  | 5      |      |
| 557058 | 15.5 | 11   | 0    | 0    | 26.5  | 15 | 7.43%  | 5      |      |
| 557069 | 15   | 11.5 | 0    | 0    | 26.5  | 15 | 7.43%  | 5      |      |
| 556232 | 16.5 | 9.5  | 0    | 0    | 26    | 22 | 10.89% | 5      |      |
| 557532 | 14   | 12   | 0    | 0    | 26    | 22 | 10.89% | 5      |      |
| 556395 | 14.5 | 11   | 0    | 0    | 25.5  | 24 | 11.88% | 5      |      |
| 557049 | 17.5 | 8    | 0    | 0    | 25.5  | 24 | 11.88% | 5      |      |
| 556532 | 15.5 | 10   | 0    | 0    | 25.5  | 24 | 11.88% | 3      |      |
| 556239 | 13   | 12   | 0    | 0    | 25    | 27 | 13.37% | 4      |      |
| 556320 | 13.5 | 11.5 | 0    | 0    | 25    | 27 | 13.37% | 5      |      |
| 556434 | 16.5 | 8.5  | 0    | 0    | 25    | 27 | 13.37% | 4      |      |
| 556471 | 14   | 11   | 0    | 0    | 25    | 27 | 13.37% | 4      |      |
| 556473 | 16   | 9    | 0    | 0    | 25    | 27 | 13.37% | 4      |      |
| 556475 | 15   | 10   | 0    | 0    | 25    | 27 | 13.37% | 4      |      |
| 555892 | 15   | 10   | 0    | 0    | 25    | 27 | 13.37% | 5      |      |
| 557147 | 14   | 11   | 0    | 0    | 25    | 27 | 13.37% | 4      |      |
| 557184 | 14.5 | 10.5 | 0    | 0    | 25    | 27 | 13.37% | 4      |      |
| 557035 | 13.5 | 11.5 | 0    | 0    | 25    | 27 | 13.37% | 4      |      |
| 555866 | 16   | 8.5  | 0    | 0    | 24.5  | 37 | 18.32% | 4      |      |
| 556305 | 17   | 7.5  | 0    | 0    | 24.5  | 37 | 18.32% | 5      |      |
| 556337 | 14.5 | 10   | 0    | 0    | 24.5  | 37 | 18.32% | 5      |      |
| 556436 | 14.5 | 10   | 0    | 0    | 24.5  | 37 | 18.32% | 4      |      |
| 557152 | 14   | 10.5 | 0    | 0    | 24.5  | 37 | 18.32% | 5      |      |
| 556545 | 17   | 7.5  | 0    | 0    | 24.5  | 37 | 18.32% | 4      |      |
| 556559 | 14.5 | 10   | 0    | 0    | 24.5  | 37 | 18.32% | 5      |      |
| 556604 | 18   | 6.5  | 0    | 0    | 24.5  | 37 | 18.32% | 4      |      |
| 558116 | 14   | 10.5 | 0    | 0    | 24.5  | 37 | 18.32% | 5      |      |
| 554881 | 13   | 11   | 0    | 0    | 24    | 46 | 22.77% | 5      |      |
| 556776 | 15   | 9    | 0    | 0    | 24    | 46 | 22.77% | 4      |      |
| 556991 | 14.5 | 9.5  | 0    | 0    | 24    | 46 | 22.77% | 5      |      |
| 555314 | 16   | 7.5  | 0    | 0    | 23.5  | 49 | 24.26% | 4      |      |
| 556294 | 14   | 9.5  | 0    | 0    | 23.5  | 49 | 24.26% | 4      |      |
| 556325 | 13   | 10.5 | 0    | 0    | 23.5  | 49 | 24.26% | 4      |      |
| 556445 | 16   | 7.5  | 0    | 0    | 23.5  | 49 | 24.26% | 5      |      |
| 554903 | 14   | 9    | 0    | 0    | 23    | 53 | 26.24% | 4      |      |
| 555312 | 14   | 9    | 0    | 0    | 23    | 53 | 26.24% | 4      |      |
| 556282 | 11   | 12   | 0    | 0    | 23    | 53 | 26.24% | 5      |      |
| 556298 | 13   | 10   | 0    | 0    | 23    | 53 | 26.24% | 4      |      |
| 556386 | 14.5 | 8.5  | 0    | 0    | 23    | 53 | 26.24% | 5      |      |
| 556543 | 13.5 | 9.5  | 0    | 0    | 23    | 53 | 26.24% | 5      |      |
| 557688 | 13   | 10   | 0    | 0    | 23    | 53 | 26.24% | 5      |      |
| 555791 | 11   | 11.5 | 0    | 0    | 22.5  | 60 | 29.70% | 5      |      |
| 556161 | 17   | 5.5  | 0    | 0    | 22.5  | 60 | 29.70% | 5      |      |
| 556302 | 14   | 8.5  | 0    | 0    | 22.5  | 60 | 29.70% | 4      |      |

|        |      |      |   |   |      |     |        |   |
|--------|------|------|---|---|------|-----|--------|---|
| 556408 | 14   | 8.5  | 0 | 0 | 22.5 | 60  | 29.70% | 4 |
| 556479 | 14   | 8.5  | 0 | 0 | 22.5 | 60  | 29.70% | 5 |
| 556928 | 15   | 7.5  | 0 | 0 | 22.5 | 60  | 29.70% | 5 |
| 557673 | 14   | 8.5  | 0 | 0 | 22.5 | 60  | 29.70% | 6 |
| 556734 | 14   | 8.5  | 0 | 0 | 22.5 | 60  | 29.70% | 4 |
| 557007 | 13   | 9.5  | 0 | 0 | 22.5 | 60  | 29.70% | 5 |
| 557659 | 13.5 | 9    | 0 | 0 | 22.5 | 60  | 29.70% | 5 |
| 557130 | 14.5 | 8    | 0 | 0 | 22.5 | 60  | 29.70% | 4 |
| 555790 | 13.5 | 8.5  | 0 | 0 | 22   | 71  | 35.15% | 5 |
| 555801 | 11   | 11   | 0 | 0 | 22   | 71  | 35.15% | 6 |
| 556412 | 15.5 | 6.5  | 0 | 0 | 22   | 71  | 35.15% | 4 |
| 556007 | 12   | 10   | 0 | 0 | 22   | 71  | 35.15% | 5 |
| 556536 | 12.5 | 9.5  | 0 | 0 | 22   | 71  | 35.15% | 4 |
| 556747 | 16   | 6    | 0 | 0 | 22   | 71  | 35.15% | 5 |
| 556883 | 11   | 11   | 0 | 0 | 22   | 71  | 35.15% | 5 |
| 557085 | 13.5 | 8.5  | 0 | 0 | 22   | 71  | 35.15% | 4 |
| 557173 | 14   | 8    | 0 | 0 | 22   | 71  | 35.15% | 5 |
| 557679 | 14.5 | 7.5  | 0 | 0 | 22   | 71  | 35.15% | 5 |
| 556972 | 14.5 | 7.5  | 0 | 0 | 22   | 71  | 35.15% | 4 |
| 554633 | 14.5 | 7    | 0 | 0 | 21.5 | 82  | 40.59% | 5 |
| 556203 | 12   | 9.5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236 | 14   | 7.5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342 | 12.5 | 9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376 | 11.5 | 10   | 0 | 0 | 21.5 | 82  | 40.59% | 5 |
| 556382 | 14   | 7.5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423 | 13   | 8.5  | 0 | 0 | 21.5 | 82  | 40.59% | 4 |
| 558879 | 12   | 9.5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500 | 13   | 8.5  | 0 | 0 | 21.5 | 82  | 40.59% | 5 |
| 556564 | 11.5 | 10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668 | 13   | 8.5  | 0 | 0 | 21.5 | 82  | 40.59% | 4 |
| 556714 | 13   | 8.5  | 0 | 0 | 21.5 | 82  | 40.59% | 5 |
| 551072 | 15.5 | 5.5  | 0 | 0 | 21   | 94  | 46.53% | 4 |
| 556359 | 13   | 8    | 0 | 0 | 21   | 94  | 46.53% | 5 |
| 556380 | 10.5 | 10.5 | 0 | 0 | 21   | 94  | 46.53% | 5 |
| 556381 | 14   | 7    | 0 | 0 | 21   | 94  | 46.53% | 4 |
| 557029 | 15   | 6    | 0 | 0 | 21   | 94  | 46.53% | 5 |
| 556553 | 13   | 8    | 0 | 0 | 21   | 94  | 46.53% | 5 |
| 556616 | 12   | 9    | 0 | 0 | 21   | 94  | 46.53% | 4 |
| 556693 | 12   | 9    | 0 | 0 | 21   | 94  | 46.53% | 4 |
| 556951 | 12.5 | 8.5  | 0 | 0 | 21   | 94  | 46.53% | 5 |
| 557062 | 13   | 8    | 0 | 0 | 21   | 94  | 46.53% | 5 |
| 556044 | 14   | 6.5  | 0 | 0 | 20.5 | 104 | 51.49% | 4 |
| 556324 | 12.5 | 8    | 0 | 0 | 20.5 | 104 | 51.49% | 5 |
| 556344 | 12.5 | 8    | 0 | 0 | 20.5 | 104 | 51.49% | 5 |
| 556431 | 12   | 8.5  | 0 | 0 | 20.5 | 104 | 51.49% | 4 |
| 556809 | 13   | 7.5  | 0 | 0 | 20.5 | 104 | 51.49% | 5 |
| 556579 | 18   | 2.5  | 0 | 0 | 20.5 | 104 | 51.49% | 5 |
| 556594 | 12.5 | 8    | 0 | 0 | 20.5 | 104 | 51.49% | 4 |
| 556631 | 12   | 8.5  | 0 | 0 | 20.5 | 104 | 51.49% | 5 |
| 556626 | 10.5 | 10   | 0 | 0 | 20.5 | 104 | 51.49% | 5 |
| 554631 | 12   | 8    | 0 | 0 | 20   | 113 | 55.94% | 4 |
| 555692 | 9.5  | 10.5 | 0 | 0 | 20   | 113 | 55.94% | 4 |
| 557205 | 10   | 10   | 0 | 0 | 20   | 113 | 55.94% | 4 |
| 554737 | 13   | 6.5  | 0 | 0 | 19.5 | 116 | 57.43% | 5 |
| 556377 | 11.5 | 8    | 0 | 0 | 19.5 | 116 | 57.43% | 5 |
| 556397 | 12   | 7.5  | 0 | 0 | 19.5 | 116 | 57.43% | 5 |
| 556260 | 13.5 | 6    | 0 | 0 | 19.5 | 116 | 57.43% | 4 |
| 556401 | 11.5 | 8    | 0 | 0 | 19.5 | 116 | 57.43% | 4 |
| 556490 | 10   | 9.5  | 0 | 0 | 19.5 | 116 | 57.43% | 5 |
| 556886 | 13   | 6.5  | 0 | 0 | 19.5 | 116 | 57.43% | 4 |
| 556905 | 12   | 7.5  | 0 | 0 | 19.5 | 116 | 57.43% | 4 |
| 557637 | 12   | 7.5  | 0 | 0 | 19.5 | 116 | 57.43% | 5 |
| 556513 | 15.5 | 4    | 0 | 0 | 19.5 | 116 | 57.43% | 5 |
| 556154 | 11.5 | 7.5  | 0 | 0 | 19   | 126 | 62.38% | 3 |
| 556234 | 12.5 | 6.5  | 0 | 0 | 19   | 126 | 62.38% | 5 |

|        |      |      |   |   |      |     |        |   |
|--------|------|------|---|---|------|-----|--------|---|
| 556272 | 9.5  | 9.5  | 0 | 0 | 19   | 126 | 62.38% | 5 |
| 556499 | 11.5 | 7.5  | 0 | 0 | 19   | 126 | 62.38% | 3 |
| 556741 | 13   | 6    | 0 | 0 | 19   | 126 | 62.38% | 4 |
| 557156 | 13   | 6    | 0 | 0 | 19   | 126 | 62.38% | 5 |
| 555732 | 10.5 | 8    | 0 | 0 | 18.5 | 132 | 65.35% | 5 |
| 556430 | 8    | 10.5 | 0 | 0 | 18.5 | 132 | 65.35% | 5 |
| 556432 | 8    | 10.5 | 0 | 0 | 18.5 | 132 | 65.35% | 4 |
| 556481 | 12   | 6.5  | 0 | 0 | 18.5 | 132 | 65.35% | 4 |
| 556494 | 11   | 7.5  | 0 | 0 | 18.5 | 132 | 65.35% | 4 |
| 556777 | 13   | 5.5  | 0 | 0 | 18.5 | 132 | 65.35% | 6 |
| 557167 | 11   | 7.5  | 0 | 0 | 18.5 | 132 | 65.35% | 6 |
| 557212 | 10.5 | 8    | 0 | 0 | 18.5 | 132 | 65.35% | 4 |
| 551046 | 12   | 6    | 0 | 0 | 18   | 140 | 69.31% | 4 |
| 556483 | 9    | 9    | 0 | 0 | 18   | 140 | 69.31% | 4 |
| 556529 | 14.5 | 3.5  | 0 | 0 | 18   | 140 | 69.31% | 4 |
| 556969 | 9    | 9    | 0 | 0 | 18   | 140 | 69.31% | 4 |
| 556399 | 11   | 6.5  | 0 | 0 | 17.5 | 144 | 71.29% | 5 |
| 556482 | 12   | 5.5  | 0 | 0 | 17.5 | 144 | 71.29% | 4 |
| 556704 | 9.5  | 8    | 0 | 0 | 17.5 | 144 | 71.29% | 4 |
| 556825 | 10.5 | 7    | 0 | 0 | 17.5 | 144 | 71.29% | 3 |
| 556360 | 17   | 0    | 0 | 0 | 17   | 148 | 73.27% | 5 |
| 557592 | 13   | 4    | 0 | 0 | 17   | 148 | 73.27% | 5 |
| 555785 | 12   | 5    | 0 | 0 | 17   | 148 | 73.27% | 4 |
| 557533 | 12.5 | 4.5  | 0 | 0 | 17   | 148 | 73.27% | 5 |
| 559135 | 11.5 | 5.5  | 0 | 0 | 17   | 148 | 73.27% | 4 |
| 556409 | 13.5 | 3    | 0 | 0 | 16.5 | 153 | 75.74% | 5 |
| 557054 | 11.5 | 5    | 0 | 0 | 16.5 | 153 | 75.74% | 5 |
| 557682 | 11.5 | 4.5  | 0 | 0 | 16   | 155 | 76.73% | 3 |
| 556569 | 13.5 | 2.5  | 0 | 0 | 16   | 155 | 76.73% | 5 |
| 556878 | 9.5  | 6.5  | 0 | 0 | 16   | 155 | 76.73% | 5 |
| 556316 | 5    | 10.5 | 0 | 0 | 15.5 | 158 | 78.22% | 4 |
| 556333 | 8.5  | 7    | 0 | 0 | 15.5 | 158 | 78.22% | 5 |
| 557073 | 9    | 6.5  | 0 | 0 | 15.5 | 158 | 78.22% | 4 |
| 559039 | 12   | 3.5  | 0 | 0 | 15.5 | 158 | 78.22% | 4 |
| 556913 | 12.5 | 3    | 0 | 0 | 15.5 | 158 | 78.22% | 3 |
| 555807 | 12   | 3    | 0 | 0 | 15   | 163 | 80.69% | 3 |
| 556219 | 12.5 | 2.5  | 0 | 0 | 15   | 163 | 80.69% | 3 |
| 556341 | 10   | 5    | 0 | 0 | 15   | 163 | 80.69% | 4 |
| 555788 | 8.5  | 6    | 0 | 0 | 14.5 | 166 | 82.18% | 4 |
| 556071 | 9.5  | 5    | 0 | 0 | 14.5 | 166 | 82.18% | 5 |
| 556189 | 10.5 | 4    | 0 | 0 | 14.5 | 166 | 82.18% | 5 |
| 556301 | 12   | 2.5  | 0 | 0 | 14.5 | 166 | 82.18% | 5 |
| 556322 | 13   | 1.5  | 0 | 0 | 14.5 | 166 | 82.18% | 5 |
| 556748 | 8    | 6.5  | 0 | 0 | 14.5 | 166 | 82.18% | 4 |
| 556833 | 6.5  | 8    | 0 | 0 | 14.5 | 166 | 82.18% | 4 |
| 557623 | 8    | 6    | 0 | 0 | 14   | 173 | 85.64% | 4 |
| 556588 | 6.5  | 7.5  | 0 | 0 | 14   | 173 | 85.64% | 5 |
| 556329 | 8.5  | 5    | 0 | 0 | 13.5 | 175 | 86.63% | 5 |
| 556420 | 6.5  | 7    | 0 | 0 | 13.5 | 175 | 86.63% | 5 |
| 556443 | 11.5 | 2    | 0 | 0 | 13.5 | 175 | 86.63% | 5 |
| 556557 | 10   | 3.5  | 0 | 0 | 13.5 | 175 | 86.63% | 3 |
| 556592 | 13.5 | 0    | 0 | 0 | 13.5 | 175 | 86.63% | 5 |
| 556357 | 7    | 6    | 0 | 0 | 13   | 180 | 89.11% | 5 |
| 556926 | 13   | 0    | 0 | 0 | 13   | 180 | 89.11% | 4 |
| 554553 | 9.5  | 3    | 0 | 0 | 12.5 | 182 | 90.10% | 4 |
| 556388 | 12   | 0    | 0 | 0 | 12   | 183 | 90.59% | 4 |
| 557685 | 8    | 4    | 0 | 0 | 12   | 183 | 90.59% | 5 |
| 557110 | 3.5  | 8.5  | 0 | 0 | 12   | 183 | 90.59% | 4 |
| 556869 | 3.5  | 8    | 0 | 0 | 11.5 | 186 | 92.08% | 5 |
| 556171 | 3.5  | 7    | 0 | 0 | 10.5 | 187 | 92.57% | 4 |
| 556373 | 8.5  | 2    | 0 | 0 | 10.5 | 187 | 92.57% | 4 |
| 556906 | 4.5  | 6    | 0 | 0 | 10.5 | 187 | 92.57% | 5 |
| 557238 | 2.5  | 8    | 0 | 0 | 10.5 | 187 | 92.57% | 5 |
| 556421 | 5.5  | 4.5  | 0 | 0 | 10   | 191 | 94.55% | 4 |
| 558092 | 10   | 0    | 0 | 0 | 10   | 191 | 94.55% | 4 |

|        |     |     |   |   |     |     |         |   |
|--------|-----|-----|---|---|-----|-----|---------|---|
| 554654 | 4.5 | 5.5 | 0 | 0 | 10  | 191 | 94.55%  | 5 |
| 556963 | 8.5 | 1.5 | 0 | 0 | 10  | 191 | 94.55%  | 5 |
| 556790 | 6.5 | 3.5 | 0 | 0 | 10  | 191 | 94.55%  | 4 |
| 557716 | 10  | 0   | 0 | 0 | 10  | 191 | 94.55%  | 3 |
| 556411 | 9.5 | 0   | 0 | 0 | 9.5 | 197 | 97.52%  | 6 |
| 558081 | 4   | 5.5 | 0 | 0 | 9.5 | 197 | 97.52%  | 5 |
| 556415 | 7.5 | 0   | 0 | 0 | 7.5 | 199 | 98.51%  | 5 |
| 556336 | 4   | 2   | 0 | 0 | 6   | 200 | 99.01%  | 5 |
| 557109 | 5.5 | 0   | 0 | 0 | 5.5 | 201 | 99.50%  | 5 |
| 556151 | 3.5 | 0   | 0 | 0 | 3.5 | 202 | 100.00% | 4 |

|                           |            |
|---------------------------|------------|
| <b>박형준/3월/기초GS+/7회/1번</b> | <b>채점자</b> |
|                           | <b>박수홍</b> |

###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초GS+ 1, 2문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상금청구권 논점은 특허권의 침해 논점과 헷갈려서 논점 자체를 누락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므로,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 (1) 설문 1

설문(1)의 경우 보상금청구권 관련 일반론으로 6점 분량 채워주시면 대부분 좋은 점수 가져가셨을 것입니다. 단문의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작성할 목차만 눈에 바르고 법전을 활용하여 작성해주시면 되므로 큰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설문 2

설문 (2)는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제 3자 조치 논점으로서, 경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조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일단 경고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 타당성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타당한 경우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모두 적어주신 분들은 논점 파악이 안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고 타당성 검토시, 신규성 위반으로 출원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선사용권 예비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출원공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고가 부당한데, 모든 논점을 찾으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조치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셔야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고, 조치마다 조금씩 포섭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침해 논점을 쓰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 경우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논점이탈입니다.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고 맞는 논점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3) 설문 3

설문 3은 보상금청구권 발생 및 행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다룬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는 특성 상 반드시 권리화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해당 논점 자체를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또한 권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안이 포섭되지 않은 답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자가 있는 A를 삭제, 발명의 설명에만 있던 B를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사안을 포섭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의 조치를 물었음에도 병의 조치를 크게 작성한 답안도 일부 보였는데,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 3. 소결

1번 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던만큼, 거의 모든 답안에서 논점 누락이 있었습니다. 모든 논점을 완벽히 파악하기란 실제 시험에서도 어려우므로, 주논점만이라도 찾아서 확실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의 그 당황감이 글씨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글씨를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웠던 답안도 많았습니다. 심하게 글씨체가 날라가신 분들은 가독성을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 <b>박형준/3월/기초GS+/7회/2번</b> | <b>채점자</b> |
|                           | <b>박수홍</b> |

##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공유특허권 논점으로서 논점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판례들의 볼륨도 크고 디테일적으로도 조심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채점 평은 이하 작성하겠습니다.

##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크게 특허권 공유의 법적성질, 공유물 분할청구 가부, 현물분할 청구 가부 판례, 총 3가지의 판례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핵심이고, 해당 판례들의 현출도와 추가적인 학설 및 과거 판례의 태도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막 열심히 민특상의 판례들의 암기상태를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7월까지 꼭 판례들의 현출도를 높여본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122조 실시권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논점 파악하고, ‘준비중’이라는 트랩을 잘 파악하여 답까지 맞춘 경우 대부분 풀배점 드렸습니다. 언제나 조문 번호 병기는 기본이니 잊지 않고 함께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단독 침해금지청구와 단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특허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조문과 관련 판례들을 함께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레퍼런스가 빈약하고 결론만 간단하게 적은 경우 설득력이 없어보이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 **3. 소결**

목차 구성과 결론은 전반적으로 유사했으나, 사안의 포섭 정도와 필요한 판례의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누락된 판례나 조문은 기본서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각자의 계획과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기본기와 실력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번주도 GS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5 <sup>개정판이다.</sup>

19

[문제 -1] &lt; I. 시민 &gt;

1. 회생금 청구권의 의의 및 취지.

채권자명의 보호를 위해 특히 채권자는 고의로  
채권자에게 생애에 있어 자에게 소정의 회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특채법 제 65조 각항).

2. 행사 대상 - 법제 65조 제 2항

채권 계속 중 채권자명의 고의로 업으로서  
실시중인 제3자에게 행사가능하다.

3. 반생금 - 법제 65조 제 3항

특채권이 실정종결된 것을 요구 한다.

4. 회생금 청구호액 - 법제 65조 제 2항

실시자가 고의로 실시한 날로부터 특히 채권자의  
실정종결을 까지 행위재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9월 9일 개정법  
에서 '동상직역'을 '행위재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정~~ 하였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5. 중용 귀장 - 법제 65조 제 4항

간접침해(특제 127조), <sup>132</sup>특제 ~~129~~의 자료 제출  
 129, <sup>129</sup>특제 129조의. 생산방법특정, 민법  
 1160조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 766조의 권리  
 소멸시효의 귀책이 중요하다.

6. 특리행위의 귀책 - 특제 65조에 따라  
특리행위의 권리자의 행사와 보호를 청구할 행사는 독립적이다.

1. 소멸 - 특제 65조 제 6항  
 ① 권리행위의 의무 확정 주자, 포기, 재결정  
 확정으로 소멸하며, 권리자의 의무 및 취소로  
 소멸한다. ② 실정특제로부터 3년, 제3자의  
 실시행위로부터 10년 후에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166조).

II 실문 1

1. 특제의 타당성 검토 - 부당.

(1) 타당성을 청구할 대상 역시 - 특제  
 특허 출원의 권리범위에 물건 A가 있고, 2년  
 실시행위 역시 물건 A로 타당성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제의 타당성 - 신규성 위반.

2년 2025년 10월 3일 부회의 물건 A 생산

판에 항의로 공여/A 도청의 불이행  
 상소권으로서 특허 개시 이후 무효사위가 존재  
 하여 특허 출원 번호 자체가 존재한다.

(3) 신사용권 성립의 예비적 지위 - 조항

그런 특허 출원 번호가 특허법 제 64조  
 성립으로 주로 신사용권 성립의 예비적  
 지위를 갖는다. 판례가 있다. 이러한 판례는  
 특허 출원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보다 크게 보호된  
 수평적인 상태에서 타당판 판판이므로 본다.

(4) 특허 출원 공개 여부 - 조항

특허법 제 64조 제 1항에 따르면 2025년  
 11월 16일로부터 1년 6월 뒤에 특허 출원이  
 공개되는 바, 이전 특허 출원 공개되지  
 않아 보상금 청구권의 성립요건'의  
공시의 성립'가 불비할 것이다.

(5) 조항

그런 신사용권 성립의 예비적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특허 출원은 개시 이후 및 특허  
 무효사위가 존재하여, 특허 출원 번호 공개가  
 되지 않거나 특허 출원 번호 공개가  
금지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2. 2의 조치.

(1) 제소 실시

2은 불인의 실시발령은 제소 실시할 수 있다.

(2) 정보제공

1) ~~정확한~~ 의의특이 - ~~법~~ 法 제 63조의 2. <sup>등하여</sup> 정한대로 공정한 실사용위하여 누구든지 특이개 등특이 거절 되지 아 는 특이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다.

2) 사안의 경우

2은 甲의 특이 연구 를 중 단 사 유 가 있 는 주 장 하 여, 그 중 을 실 사 지 식 재 산 지 가 제 출 할 수 있 다.

(3) 실사청구 - 법 제 59조

2은 甲 특이 의 바 른 거 절 판 단 의 배 지 를 등 해 甲 정 고 등 의 안 내 를 실 사 청 구 하 는 위 에 실 사 청 구 를 신 청 할 수 있 다.

(4) 원소 실사 청구 - 법 제 61조

2은 자 신 의 특이 실 사 발 령 은 권 고 특이 공 개 후 특 리 법 제 61조 제 1항 의 사 유 를 등 해 원 소 실 사 청 구 를 하 는 위 에 무 문 의 조 속 한 거 절 판 단 을 위 청 할 수 있 다.

(5) 특이 포기 권위

2은 甲 에게 특 리 거 절 사 유 를 등 해 특이 의 특이

필을 개기 할 수 있다.

(6) 다른 시술

특의 청구항의 내용이 부속태는 내용과 특의  
특가가 술해배상의대상, 영감방태구의 대상  
이될 수 있음을 필요할 수 있다.

II 실문 (3). 7.5

1. 보상의 권리, 대상확인.

→ 법 65조에 따르면, 특허출원 계속공 고의  
업으로서 실시하는 지이거 보상을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는 바, 제항 B를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2. 보상을 위한 방법은 위헌조치

(1) 권리와 전제 ~~법~~ 제 47조.

1) 보상의 의미 취지

신출원주와 보상을 위해, 승정기 ~~특~~ 권리에  
취해 배위와 명세서의 내용은 보상할 수 있다.

2) 시안의 경우

특은 그의 실시 위해 신출원 출원을 갖고  
있는 반영 A를 ~~신제~~ 부경되어 출원 일체의  
유전적에 의한 제정을 ~~반경~~ 명세서 이.





丙이 甲의 특허 출원 행위를 심사청구를  
안해부러 실용등록일까지 권리청으로 발원  
수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 소멸 시효 - 민법 766조.

甲특허 실용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 가능하다.

5. 특허권 행사

(1) 독립적 행사 - 제 125조 제 4항

최소 20년과 별개로 甲은 丙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2) 민형사상 조치.

甲은 丙에게 특제 126조에 따른 침해금지  
청구 특제 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특제 225조에 따른, 특허권 침해고소 등의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

(3) 기타조치

민사집행법 300조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른 가압류 처분,  
민사소송법 375조에 따른 증거보존, 법  
제 135조 제 1항에 따른 직권적 권리보위  
조치 소판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끝>

Good!

12.5  
6  
[문제-2]I. 문제를(1)을 분석하여.1. 공유에 대한 특허법 규정

특허법은 공유를 분할 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2. 문제 제기

특허법 제 99조 제 2항, 제 4항이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 일체, 질권 설정, 지분양전,

실사권 설정 시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법의 공유규정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합유에 준용되는지 문제이다.

3. 특허권을 공유가 합유에 준하는가 - 소극.

최근 대법원 제 1회 1회 판례에 따르면 "특허법 제 99조

제 2항 제 4항의 규정이 어느정도 합유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복수 인의 이는 특허권이 무체적 재산

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특허권 공유자가 합유의 ~~특성~~ 공유자로 ~~취~~

조항에서 합유로 취득 하기 가능이고, 특허법

에서도 특허권은 합유로 분할은 명시상 규정

없지만 바,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권의





공기 물리 보통 광선 안으로 가온다.

(3) 특허 방식 제131조

특허권 행사자는 보통 광선으로서 그 인이 침해금지로  
청구할 수 있다.

(4) 경우

공회사 1인이 침해금지 청구가 불가하다면 공  
회사의 판단 등이 심사를 실행 한 것이  
되어 특 제 99조 제 1항에 위반하므로  
특허 방식 제131조가 적용된다.

(5) 경우

공회사 1인이 안으로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2.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거부 - 제128조

(1) 유니 특허 제128조

특허권사용회 특허권 보도 이익 이득을 유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해기 위한다.

(2) 위법 제131조

공회사용 1인이 공기를 침해사기 해 불<sup>법</sup>  
행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특소용<sup>위</sup>  
의 지불' 명으로 손해배상 을 인정 해었다.

(3) 특허 방식 제131조

특허권자 등 공시자 중 일부가 자신의 발명을  
 순위에 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3) 상호

특허법권 위계가 일응 통상된다

(4) 소결

특허권 보유자 중 일부는 특허권<sup>1</sup> 공시지후기 권리에  
 자신의 특허권 중 일부 관련 순위에 상이 청구가  
 가능하다

<이하 여백>

18

문제 - 1

I. 별문 (1)

35

1. 반송금청구권의 의미 및 취지 - 법제 65조

출원발명 반환을 위해, 출원발명의 무단 실시자에게 반송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요건

반송금청구권은 출원권자 또는 제3자가 출원발명을 권리 침해로 실시해야 발생한다 (법제 65조 제2항)

3. 행사요건

반송금청구권은 출원발명이 실정등록 되어야 행사 가능하다 (법제 65조 제3항)

4. 청구가능금액

출원권인은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실정등록일까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 65조 제2항)

5. 특허권과의 관계

반송금청구권과 특허권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제 65조 제4항)

6. 권리행사

반송금청구권도 간접침해, 명백방범의 취지, 자위제출행위, 공동분법 행위, 인위적 행위를 증명한다.

7. 권리

①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판결 확정되거나 특허가 무효, 취하





㉠ 사안

201 독자지원 발간한 요건 A가 생략. 판매되고 있어 ~~한~~ 특의  
출판에 신기술 위반의 하자가 존재한다.

2) 심사청구 예비적 지위

① 출원일부터 발간을 실시하고 있던 제3자는 신사용권이 인정될  
전후 여지가 없고, 고가한 기사가 인정된 기사의 신기술 능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 사안

2020 특의 출원 (2025.11.16) 전부터인 ~~특~~ 2025.10.3부터 요건 A를  
생략. 판매 중이므로 신사용권이 인정될 예비적 지위가 있다.

(3) 결론

2020 신기술 위반과 신사용권이 인정될 예비적 지위를 ~~2020~~ 특의 제3자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다.

3. 2의 견치

(1) 계속실시

2020 특의 출원발행 A에 하자가 있고, 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어  
계속 실시가 가능하다.

(2) 정반제출 - 2차 제63조 2

1) 의의

누구든지 출원발명에 대해 거짓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정반제출이 가능하다

2) 사항

① 발명에 상대방 위반의 거짓사실이 있음을 정반제출 할 수 있다.

(3) 심사청구 - 2차 제59조

1) 의의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다.

2) 사항

심사청구한 사실이 진실하다, 심사청구 할 수 있다.

(4) 우선심사청구 - 2차 제61조 1호

~~발명자~~ 1) 의의

다른 심사청구를 위해 누구든지 우선심사청구 가능하다.

2) 사항

2호 제61조 1호를 이유로 자신이 출원발명을 심사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 청구 가능하다.

(5) 출원 포기 취하 사유

2호 상대방 허위를 이유로 출원 포기 취하 요청 가능 하다.



III. 원 (3) **7.5**

1. 경쟁정리

출원 계속 중인  
제 1자  $\bar{A}$ 이  $\bar{A}$ 의 발명 A를 실시한 있을 때, 출원인이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2. 반상금지권 대상 권리

출원 계속 중 출원발명으로 제 1자가 권리 침해 실시한 것을 말한다.

1) 출원발명 여부 - 적극

$\bar{A}$ 의 청구범위에 해당 물건 A가 기재되어 있어서 출원발명에 해당한다.

2) 제 1자 침해 실시 여부 - 적극

제 1자 물건 A를 실용. 판매한 있으므로 제 1자 침해 실시에 해당한다.

3. 반상금지권 대상 권리

(1) 권리행사를 위한 권리 - 이후 제 4항 참조

1) 정제

제 1자가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실시할 때,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가능하다.

2) 변경의 의미 및 취지

출원인 이익을 위해, 출원인 스스로 발명을 보충. 정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사안

제 1자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 1자 B를 청구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

**7A 삭제**

(2) 출원공개여부 한도인 - 조 제 64조1) 예외

중복연구·특차 방지를 위해,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된다.

2) 사안

출원일부터 1년 6월 지나지 않아 출원공개되지 않았다.

(3) 전기공개성격1) 예외

→ 출원공개는 전기의 예외이므로 비공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안

특수 전기공개성격을 가진 것이다.

(4) 서명명근1) 예외

서명명근은 전기의 예외이므로 서명명근을 함으로써 권리를 성립시킬 수 있다.

2) 사안

특수 출원공개 후 서명명근 가능하다.

3. 반상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조치(1) 심사청구 - 조 제 59조1) 예외

특허출원후, 심사청구된 출원만 심사하므로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하다

2) 사안

특수 심사청구 항은 출원발명을 특정등록 시켜 반응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 우선심사신청

1) 특허의

누구든지 바른 권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 가능하다.

2) 사안

특수 제1차 특이 출원발명 명세서 내용 이유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다.

4. 반응청구권 행사

(1) 처가가능금액

특수 관리청원부터 특정등록일까지 합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처가 가능하다.

(2) 단계별 신청

특수 반응청구권은 특정등록일부터 3년 청구행위 청원일부터 10년 후라하면 소멸된다.

5. 특허권 행사

(1) 특허권자의 권리

특수 발명이 특정등록 되면 특수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





① 일반적으로 특허권 공유자들이 반드시 조합체를 형성해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② 특허 권리에 합류하는 대원리 규정도 없기에 ③ 특허법 다른  
규정이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 공유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특허법에도 적용시켜 원칙적 공유권의 양상이다.

4. 공유를 받는 처가 거부 - 순위제

1) 순위제는 공유자들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을 때, 이를 해소시키는  
수단으로서, 공유를 분할 처구를 허용하는 제3자 지분의 강제적 가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허법 규정이 반하지 않고, 특허법에  
공유를 분할 금지 규정도 없기에 공유를 분할 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검토

실효성이 있는 공유자는 실효성이 있는 공유자 중립이 없으며 이익충돌이  
나를 검토 고려할 때, 타당하다.

5. 분할방식

1) 현물분할 - 순위제

순위제는 특허권은 ~~변환~~ 반개 실시의 특성이므로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현물분할을 실시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복수 특허권으로 확장되는  
부당한 결과가 내재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물분할을 금지한다.

2) 실시 준비중 - 순위제

공유자 중 1인이 실시 준비 중인 경우, 대원리의 특허권 행사를 장려 실시  
차단될 수 있어 1회분할에 의한 현물분할은 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침해금지청구

① 권유자 중 1인도 반소행위는 단독으로 청구 가능하다 (민법 제267조 단1)

② 수괴자는 특히 권유자 중 1인도 반소행위로서 침해자에게 제267조의 청구 침해금지청구다 권유 때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② 검토

다른 제 99조 사항에 반하지 않아 판정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

① 대법원 수괴자는 권유에 대한 반소행위를 유리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각 자 별 비율 대로 청구가능하다고 했다.

② 특히 대법원 수괴자는 침해자에게 특히 권유자 중 1인에게 그 자 별 비율 대로 한 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바 있다.

② 검토

권유자 자 별 한 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 아바라백 -